

---

#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2016. 3.**





# 목 차



I . 지방세법령 개정사항 .....	4
II .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	8
III . 지방소득세 총칙 .....	11
IV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15
1. 과세체계 .....	15
2. 과세표준과 세액 .....	16
3. 신고 · 납부 .....	19
4. 특별징수 .....	27
5.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30
V .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33
VI .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36
VII .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38
VIII .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43

##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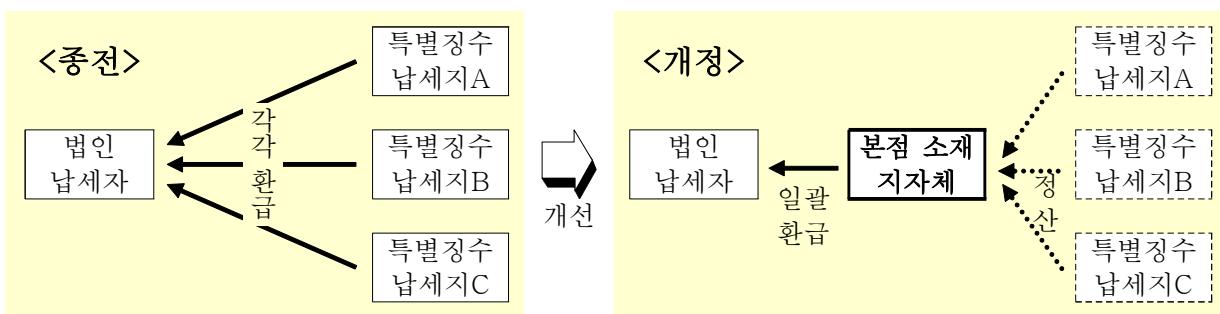
구 분	내 용	페이지								
<b>◇ 과세표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동일 ※ 「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예: 조특법 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li> </ul>									
<b>(x) 세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세율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5px; 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과세표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세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억 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억 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2%</td> </tr> </tbody> </table> </li> <li>○ 토지 등 양도소득 : 1%(미등기 4%)</li> <li>○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0.9%(20억초과 1.2%)</li> </ul>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1%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2%	200억 원 초과	2.2%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1%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2%									
200억 원 초과	2.2%									
<b>◇ 산출세액</b>										
<b>(-) 공제·감면세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 규정 없음</li> </ul>									
<b>(+) 가산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신고 가산세 : 20%(40%) ※ 납부만 한 경우, 안분명세서 등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li> <li>- 과소신고 가산세 : 10%(40%)</li> <li>-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0.03%</li> </ul> </li> <li>○ 지방세법상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장,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불성실 · 지출증명 미수취가산세 등(법인세 가산세 징수금액의 10%)</li> </ul> </li> </ul>									
<b>(+) 추가납부세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면분 추가납부, 업무무관비용 및 지급이자</li> <li>- 이월과세</li> </ul> </li> </ul>									
<b>◇ 총부담세액</b>										
<b>(-) 기납부세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부과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등</li> </ul>									
<b>(±)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년 이전 귀속분에 대한 경정 ·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세액 (당초세액의 100분 10에 미달되는 경우)</li> </ul>									
<b>◇ 차감납부할세액</b>										

## I. 지방세법령 개정사항 ['15년 12월 개정]

### ①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제도 시행 (법 제103조의62)

#### <개정내용>

- (종전) 특별징수 납세지가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거나, 여러곳인 경우 납세자가 각 특별징수 납세지에 환급 신청해야하므로 번거로움※ (지방세법 시행령 §100의34) 지방소득세가 과오납된 지자체에서 해당 과오납금을 환급
- (개정) 본점 소재 지자체가 납세자에게 일괄환급하도록 환급지 특례 규정 및 지자체 간 정산 규정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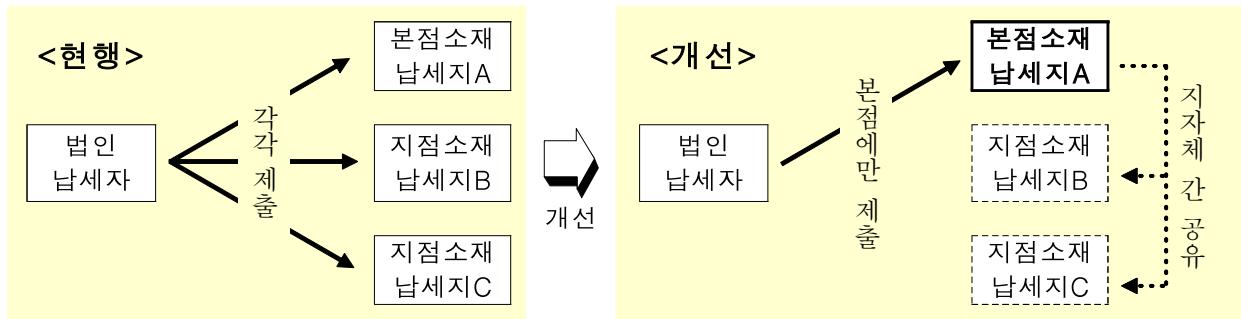


### ②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개선

#### □ 첨부서류 제출방식 간소화 (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37)

#### <개정내용>

- (종전)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일한 첨부서류(재무제표)를 각 지자체에 제출
- (개정)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납세자가 본점 소재지에만 제출하고 본점 소재지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자료를 통보하여 공유



## □ 첨부서류 제출 납세협력의무 확보수단 신설 (법 제103조의23)

### <개정내용>

- (종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야하나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규정은 없음
  - 가산세 부과 등 협력의무를 유인하는 강제규정이 없어 납세자가 서류를 미제출하는 사례 발생

※ 법인세의 경우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 부과
- (개정) 지방소득세 과세관리를 위한 첨부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법인세와 같이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세액의 20%) 부과하여 과세자료 관리 강화
  - 다만, 단순 누락의 경우 과세관청의 보정요구 등 시정기회 부여

## □ 미환류소득과세를 신고서식에 반영 (영 제100조의12①)

### <개정내용>

- (종전) 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가 '1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에 해당내용 반영 필요
-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신고서 서식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欄) 추가

##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신설 (영 제100조의12②·④)

### <개정내용>

- (종전) 안분명세서 제출 및 서식 규정 미비
-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서식을 규칙서식에 따르도록 규정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6서식 참고

## □ 재무제표의 전산제출 특례 (영 제100조의12⑥)

### <개정내용>

- (종전)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때 재무제표를 표준재무제표 제출로 갈음
  - 표준재무제표 제출 시 원 재무제표 사본 등 제출할 필요 없어 간편
- (개정) 지방소득세도 표준재무제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 ③ 법인 업무무관비용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법 제103조의63)

### <개정내용>

- (종전) 업무무관비용은 「법인세법」 상 손금이 아니므로 자산취득비를 손금처리 후 비업무용으로 사용 시 자산취득비를 다시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법인세를 추가납부 하나 지방소득세는 추가납부 규정이 없음
- (개정) 업무무관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납부

※ 이 법 시행('16.1.1.) 후 자산 매각 등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④ 기타 개정사항

##### □ 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절차 개선(법 제101조, 제103조의28)

###### <개정내용>

- (종전) 국세와 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sup>\*</sup>을 각각 신청하도록 되어있어 납세자 착오로 법인세만 신청 시 지방소득세 환급 불가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중소기업에 결손(적자)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을 소급하여 환급
- (개정) 국세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시 지방소득세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와 동일하게 환급  
※ 이 법 시행('16.1.1.) 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 특·광역시 내 일괄신고제도 도입 (영 제88조④)

###### <개정내용>

- (종전) 특·광역시 内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소재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sup>\*</sup> 자치구에 일괄납부도록 하고 있음
  - 납부만 일괄납부하고 신고는 각 구청에 하도록 되어있어 납세자가 체감하는 편의성은 반감
- (개정) 특별시·광역시 내 일괄 납부제도를 일괄 신고·납부제도로 확대

## II.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 ① 과세대상

- 법인지방소득 : ① 각 사업연도소득, ② 청산소득, ③ 토지 등 양도 소득, ④ 미환류소득
  - 법인소득의 경우 모든 종류의 소득이 법인장부에 기입되므로 소득의 구분 없이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
  - 해산 시 잔여재산의 자산가치 증가액(매각 전 미실현 가치 증가분에는 과세 않으므로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을 청산소득으로 과세
  - 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장부에 기입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있으나,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1~2.2%)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보다 낮아(0.6~3.8%) 투기방지를 위해 추가 과세
  - 대기업에 대하여 '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투자·임금·배당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사내유보금)에 대하여 추가로 과세함

### ② 납세의무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구 분	거주자(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
과세범위	국내·외 소득 모두 ※ 단, 국외납부세액은 이종과세 조정 위해 국세에서 세액공제	국내 원천소득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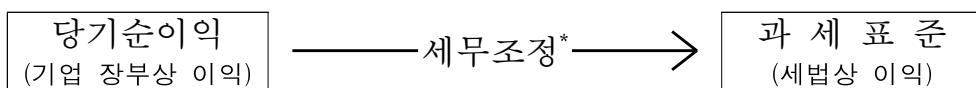
### ③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법인세는 3개월 이내)  
※ 안분계산 때문에 법인세 +1개월로 규정, 전체 법인의 95% 이상이 4월에 신고

## 4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방식과 동일		※ (기존) 소득·법인 세액(결정세액)
세율	법인분	2억 원 이하	1.0%	
		2억 원 ~ 200억 원	2.0%	
		200억 원 초과	2.2%	
특별징수	법인세액의 10%		※(기존)법인세액의 10%(탄력 세율 적용)	
	탄력세율	자자체별로 세율의 50% 가감 적용 ※ 2016년까지는 적용 유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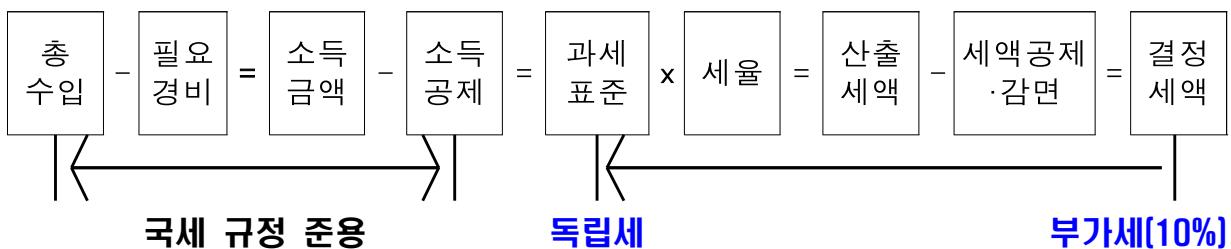
\*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 :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예) 접대비는 기업장부상으로 전액 비용이지만 세법상으로는 한도내 비용만 인정  
⇒ 매출누락과 더불어 세무조사의 주된 영역임

## 5 법령 구조

### < 지방소득세 과세 구조 >



- \* 부가세 구조 : 국세 결정세액 × 부가세율(10%) = 지방소득세
- \* 독립세 구조 : 국세 과세표준 × 독립세율 - 공제 · 감면 = 지방소득세

- 필요경비, 소득공제, 비과세 등은 과세표준 관련 사항은 「법인세법」 계산방식에 따름(법인세법 준용)
- 세율 및 세액계산 등 관련사항은 지방세법에 규정, 세액공제·감면 (법인은 해당 없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
- 자자체 조례로 탄력세율(표준세율에서 50% 가감) 및 공제감면 적용 가능

## ⑥ 납세지(해당 특·광역시, 시·군)

-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기준 안분)
  -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비율대로 신고·납부해야 함

## ⑦ 납부[징수]방법

- (신고납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법인	사업연도소득 등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청산소득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 후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III. 법인지방소득세 총칙

#### □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 범위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지법 §86의①)

-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
  - ◆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 (법법§2①)
-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
  - ◆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되며
  -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됨
- 법인이 주택(부수토지 포함)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때에는 양도 소득에 1%(미등기의 경우 4%)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

※ 법인구분별 과세소득의 범위(법법 §3)

구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청산 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과세○	과세○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과세○	과세X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	과세○	과세X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과세○	과세X

- ※ ①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법법 §2③),  
 ② 외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외국법인(법법 §1(4))에 해당됨

▪ 「지방세법」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 ③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인의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清算所得)
  3. 양도소득

## □ 사업연도

- (개념)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으로 그 기간은 1년 초과 불가  
(지법 §85 ① 11호 및 법법 §6)

구분	사업연도
법령·정관 등에서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있는 법인	· 법령·정관등에서 규정한 사업연도
규정이 없는 법인	사업연도 신고 O
	사업연도 신고 X

- (사업연도의 변경)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함 (법법 §7)
- (사업연도의 의제) 법인에게 해산·합병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구분 (법법 §8)

## ❖ 사업연도의 의제

사유	사업연도	
해산시	1사업연도 1.1	1사업연도 6.30 (해산·파산등기일) 12.31
잔여재산가액 확정시	1사업연도 1.1	1사업연도 7.10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합병·분할에 의해 소멸시	1사업연도 1.1	1사업연도 7.20 (합병·분할등기일)
청산 중 사업계속시	1사업연도 1.1	1사업연도 4.30 (사업계속등기일) 12.31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폐지시	1사업연도 1.1	1사업연도 6.30 (국내사업장 폐지)
외국법인의 부동산 소득 미발생시	1사업연도 1.1	1사업연도 5.31 (신고일)
설립무효·취소 판결시	1사업연도 1.1	1사업연도 5.1 (확정판결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1사업연도 1.1	1사업연도 4.30 (연결납세사업연도 개시일 전일)

- 「지방세법」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②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하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 □ 납세지

-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지법 §89 참조)

구분	납세지
내국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 :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li> <li>예외 :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 소재지</li> </ul>
외국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 : 국내사업장(둘 이상인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li> <li>예외 : 국내사업장 없고 부동산·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자산 소재지</li> </ul>

-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그 사업장 소재지(지법령 §87① 참조)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자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납세자
  2.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자.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납세자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자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2.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의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기본통칙 85-3 【인적설비, 물적설비】**
  1. 「법인세법」 제85조제5호의 「인적설비」란 계약의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지방세법」 제85조제5호의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 IV.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1 과세체계

####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관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 월 결 손 금

⊖ 비 과 세 소 득

⊖ 소 득 공 제

세무조정

과세표준

· 과세표준 (지법 §103의19)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지법 §103의28)

⊗ 세율

· 세율 (지법 §103의20)

산출세액

· 세액계산 (지법 §103의21)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지법 §103의31)

⊖ 세액공제+ 감면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지법 §103의22)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감면

⊕ 가산세

· 가산세 (지법 §103의30)

· 무(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기법 §53의2,3,4)

· 가산세의 감면 (지기법 §54)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이월과세 (지특법 §119,§120,§126,§128) 등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기신고세액, 결정·경정세액, 수시부과세액

납부할 세액

· 확정신고와 납부 (지법 §103의23)

· 수정신고 (지법 §103의24)

- 결정과 경정 (지법 §103의25), 수시부과결정 (지법 §103의26), 징수와 환급 (지법 §103의27)
- 특별징수의무 (지법 §103의29) ← 2015.1.1부터 적용
-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지법 §103의32)
- 연결법인 (지법 제8장제7절), 청산소득 (제8절), 외국법인 (제9절), 동업기업 (제10절)

## 2

# 과세표준과 세액

## □ 과세표준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 (지법 §103의19)

⇒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과 동일

❖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 □ 세율

- 각 사업연도의 소득(지법 §103의20①)

과세표준	세율	비고
2억 이하	1%	
2억 초과	2백만원 + (2억 초과하는 금액의 2%)	법인세 세율의 10%
200억 초과	3억9천8백만원 + (200억 초과하는 금액의 2.2%)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가능(지법 §103의20②)  
(2017.1.1 이후부터 적용,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부칙 §1 단서)

▪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2014.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2항, 제103조의3제4항 및 제103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계산방법

세법에 따른 계산방법 (지법 §103의20①)	누진공제액을 통한 계산방법 (신고서작성 등 실무에서 활용)																				
<계산방식> 전단계까지의 누진세액, 전단계까지의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해당 단계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	<계산방식>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																				
<세율표>	<세율표>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r> </thead> <tbody> <tr> <td>2억원 이하</td><td>과세표준의 1%</td></tr> <tr> <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2백만원 + (2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2%)</td></tr> <tr> <td>200억원 초과</td><td>3억9천8백만원 + (200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2.2%)</td></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2%)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율</th><th>누진공제액</th></tr> </thead> <tbody> <tr> <td>2억원 이하</td><td>1%</td><td>-</td></tr> <tr> <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td>2%</td><td>200만원</td></tr> <tr> <td>200억원 초과</td><td>2.2%</td><td>4,200만원</td></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	200만원	200억원 초과	2.2%	4,200만원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2%)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	200만원																			
200억원 초과	2.2%	4,200만원																			

## □ 세액계산

-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 (지법 §103의21 참조)

$$\text{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left( \text{과세표준} \times \frac{12}{\text{사업연도의 월수}} \right) \times \text{세율} \times \frac{\text{사업연도의 월수}}{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 □ 세액공제 및 감면

-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함 (지법 §103의22 참조)
  - '15년 귀속 기준 지특법상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는 §167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만 규정

## □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특법 §167)

-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100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 72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또한 동일하게 적용됨(지방세법 제103조의19)

-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이 주택(부수토지 포함)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때에는 양도 소득에 1%(미등기의 경우 4%)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지법 §103의31)

❖ 법법 §25 ① 1호 중소기업은 지법 법률 제 12505호 부칙 제 5조에 의해 '15.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미등기 토지 등 제외)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으로 안분하여 납부

## □ 확정신고 및 납부

- (신고기한)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지법 §103의23 참조)

❖ 납부할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 가산

-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내국법인 신고기한연장 관련 유의사항

법인세는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결산이 신고 기한까지 미확정되어 신고기한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연장되나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의 기한연장 신청제도가 없음에 유의할 것

※ (예시) 12월말 결산법인의 2014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된 경우 2015.4.30까지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참고) 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경우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내 신고 납부 (§91 ①)

##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

-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③ 세무조정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④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둘 이상 자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 ⑤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⑥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법인)
- ⑦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 (합병법인)

※ ①~④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로 간주. 단, 둘 이상의 자자체에 법인 사업장이 있는 경우 지법 제103조의23 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자체에만 제출('16년부터)

## 유의사항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부과
  - (참고) 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경우 신고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91 ⑤)하였으나, 해당조항은 삭제

###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 요약

구 분	관련 조문	서식	비 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지침 § 48의4①	43호	기준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지침 § 48의4②	43호의2	세무조정계산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지침 § 48의4⑤	43호의3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지침 § 48의4⑤	43호의4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을) - '15.1월 이후 특별징수세액 발생시 부터 작성	지침 § 48의4⑤	43호의5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갑)	지침 § 48의5①	43호의7	첨부서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16년 추가)	지침 § 48의4③	44호의6	첨부서류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	지침 § 48의8	43호의9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지침 § 48의4⑤	43호의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지법 § 103의23②		첨부서류
현금흐름표(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해당)	지령 § 100의12⑤		첨부서류
표시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만 해당)	지령 § 100의12⑤		대상 법인에 한해 작성
피합병법인등의 재무상태표승계한 자산 및 부채명세서·소재지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합병법인만 해당)	지령 § 100의12⑤		대상 법인에 한해 작성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와 안분신고서를 제외한 첨부서류는 본점 지자체에 제출가능

##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 • 자치단체별 신고·납부세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다음 지자체별 사업장 안분율(이하 “안분율”이라 함)에 따라 안분

$$[(\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 수}}) + (\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div 2$$

- ❖ 사업장: 인적 설비(종업원) 또는 물적 설비(건축물 등)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모텔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건설현장사무소, 연구시설, 기숙사, 연수원 등)
- ❖ 종업원 :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외근무자는 제외
- ❖ 건축물 연면적 :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 다만,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 ❖ 사업장용 건축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임  
※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사업장 안분면적에 불포함, 법인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포함
- ❖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
- ❖ 안분계산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고지하기 전까지는 가산세 부담없이 수정신고 할 수 있음

- ② 세액공제·감면 : 지자체별 공제·감면세액을 차감

### ③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등 지방세기본법의 가산세는 해당 지자체별 적용 가산 단, 지방세법 제103조의30 가산세는 안분율에 따라 안분 가산

### ④ 기납부세액 (특별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

- 특별징수된 기납부세액은 안분율에 따라 지자체별로 안분

\* 조과납부하여 환급세액(특별징수세액)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본점 소재지 지자체 안분신고서 기납부세액에 산입

- 수시부과된 기납부세액은 해당 자치단체의 산출세액에서 차감

### ⑤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舊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舊 지방세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및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 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의 세액을 가감

\*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부가세 방식)

\*\*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독립세 방식)

## 계산 사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Q) 사업연도가 1.1~12.31인 법인의 과세표준이 3억원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부담 계산 (현행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 규정 계속유지 가정)

- 법인세 기타 자료 : 공제세액 1,000만원, 중간예납 500만원, 주주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00만원
- 종업원수 및 사업장 면적 현황

구 분	종업원수	사업장면적	안분율
A지방 본점	40	90	25%
B지방 지점	60	120	35%
C지방 사무소	100	90	40%
합 계	200	300	100%

→

<사례>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 법인지방소득세 계산내역

구 분	산출세액	안분 <sup>2)</sup>	가산세 <sup>3)</sup>	납부할세액
A지방	400 <sup>1)</sup>	100	5	105
B지방		140	7	147
C지방		160	8	168
합 계	400	400	20	420

- 1) 산출세액 계산 :  $200\text{만원} + (3\text{억}-2\text{억}) \times 2\% = 400\text{만원}$
- 2) 안분세액 계산 :  $400\text{만원} \times \text{자치단체별 안분율} = 100, 140, 160\text{만원}$
- 3) 가산세 안분 :  $20\text{만원} \times \text{자치단체별 안분율} = 5, 7, 8\text{만원}$

<참고> 법인세 계산내역

- ① 산출세액 :  $2,000\text{만원} + (3\text{억}-2\text{억}) \times 20\% = 4,000\text{만원}$
  - ② 납부할세액 :  $4,000\text{만원} - 1,000\text{만원} + 200\text{만원} - 500\text{만원} = 2,700\text{만원}*$
- \*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3,200만원이나 중간예납시 납부한기 납부세액 500만원이 있으므로 차액인 2,700만원을 확정신고시 납부

## □ 수정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지자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  
(지방세법 §103의24①)

\*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여 세무서로부터 법인세를 경정 받은 경우에도 「지방세 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기 전까지 납세자는 수정신고 가능

-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자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가 있는 경우 부과고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가 가능하며, 그에 따른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은 없음 (지방세법 §103의24②,③ 참조)
- “납세자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에 따른 경정등의 청구로 인한 환급 세액은 다음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 가능 (지방세법 §103의24④ 참조)

### 유의사항

-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되는 세액의多少에 상관없이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舊 지방세법의 ‘10% 미달시 가감신고 제도’ 폐지)
  - ☞ 2013. 12. 31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당초 세액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여 신고 납부 가능 (舊 지법 91①단서)
- 세무서로부터 2014. 1. 10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경정고지를 받은 경우 고지서상 납부기한에 관계없이 지방세관계법상 세율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기한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여야 함
  - ☞ 2013. 12. 31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결정·경정고지를 받은 경우 고지 시기와 상관없이 구 지방세 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부가세 방식에 따라 고지서상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 신고·납부 (§91 ①)

## □ 결정과 경정

- 납세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지법 §103의25 참조)

## □ 수시부과결정

- 납세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연도 중 내국법인에게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가능 (지법 §103의26①)

\* 수시부과사유 (지령 §100의17① 및 법령 §108①)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수시부과는 사업연도와 상관없이 수시부과기간\*에 대하여 부과하며, 수시부과기간이 1년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세액을 계산 (지법 §103의26② 및 지령 §100의17②)

\* 수시부과기간

- 일반적인 경우 :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 수시부과기간이 1년이 아닌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계산

$$\left( \text{과세표준} \times \frac{12}{\text{수시부과기간 월수}} \right) \times \text{세율} \times \frac{\text{수시부과기간 월수}}{12}$$

⇒ 지법 §103의26에 의한 수시부과 시 지법 §103의30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법인세와 동일 적용)

## □ 징수와 환급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신고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 (지법 §103의27①)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시부과하거나 특별징수한 세액이 향후 법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오납된 지방자치 단체에서 환급 또는 충당 (지법 §103의27② 및 지령 §100의34)

##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중소기업(조특령 §2)이 법인세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환급 가능 (지법 §103의28 참조)

❖ 환급신청세액 = MIN (①, ②)

①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frac{\text{직전사업연도}}{\text{법인지방소득세}} - \left( \frac{\text{직전사업연도}}{\text{법인지방소득세}} - \frac{\text{소급공제}}{\text{결손금액}} \right) \times \frac{\text{직전사업연도}}{\text{법인지방소득세}} \text{세율}$$

$$\frac{\text{법인지방소득세}}{\text{산출세액}}$$

$$\frac{\text{과세표준}}{}$$

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

$$\frac{\text{직전사업연도}}{\text{법인지방소득세}} - \frac{\text{직전사업연도}}{\text{법인지방소득세}} \text{감면세액}$$

$$\frac{\text{산출세액}}{}$$

$$\frac{\text{과세표준}}{}$$

-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법인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환급세액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 징수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감소,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환급세액 감소,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의 신청에 따른 환급 (지법 §103의28⑤ 각호)

## □ 가산세 - 지방세법

- (일반) 「법인세법」의 각종 협력의무의 이행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10% 수준의 가산세를 법인지방소득세의 가산세로 부과 (지법 §103의30 참조)
  - '주주등의 명세서' 등을 법인세법 등에서 규정된 제출기한 내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제출 불필요

### 유의사항

- ※ 무기장 등 증명불비 가산세(「법인세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10%)와 신고불성실 가산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에 동시에 해당 되는 경우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
- ※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징수하는 가산세의 10%임(가산세 감면분은 제외)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가산세)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가산세\*는 동업자의 가산세에 합산 (지법 §103의54 참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30 및 제103조의57 가산세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세 적용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기본법」 상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상 과소신고 가산세도 미부과 (지법 §103의61 참조)

## □ 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모든 세목 동일 적용)

- ※ 지방세기본법 개정('15.12월말)에 따라 가산세 계산기준이 산출세액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변경되었으나, 적용기준이 개정 법 시행('16.1.1.)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함(부칙 법률13635호 제3조)
- ※ 따라서, '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16.1.1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가산세 계산기준으로 함

- (무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를 가산세 부과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 부과
- (과소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
-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일당 0.03%의 가산세 부과
-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에 일당 0.03%의 금액을 더하여 가산세 부과
- (가산세 감면 적용)
  - 수정신고의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해 2년 이내 10%, 1년 이내 20%, 6개월 이내 50% 감면
  - 기한후 신고의 경우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 1개월 이내 50% 감면
  - 과세전적부심사가 지연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50% 감면

## 4

## 특별징수

### □ 특별징수 개요

- 법인의 이자·배당소득<sup>\*</sup>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그 소득의 지급자(금융기관 등☞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에서 미리 공제하여 지자체에 납부
  - \* (비교) 개인은 이자·배당소득 뿐 아니라 근로·사업·연금·퇴직소득에 대하여도 특별징수
- (납세지) 이자·배당소득의 지급지(계좌개설지)
  - ※ 단,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사무를 본점에서 일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가 납세지임

#### ❖ 법인지방소득세 반기별 납부

지방세법 § 103의29 ⑤에서 「법인세법」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반기별 납부를 인정함

##### ☞ 법인세 반기별 납부 대상자

직전년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로서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

### □ 특별징수대상과 세율

원천징수대상 소득		세율
① 이자소득금액	일반 이자소득금액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증권의 이자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	2.5%
②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투자신탁의 이익		1.4%

### □ 특별징수의무

-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에 납부

## □ 내국법인 특별징수 시행 시기

- 특별징수의무자는 이자 · 배당소득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지급기준으로  
'15.1.1. 이후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지방세법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조)
  - \*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예시) '14년 10.1.~12.31. 발생된 이자소득 10,000 원을 '15.1.15. 지급할 경우

① '14.10.1~ '14.12.31.	② '15.1.15	③ '15.2.10.
이자소득 발생(10,000원)	1,400원 법인세 원천징수 140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8,460원 소득자에 지급	원천징수세액 1,400원 세무서 납부 특별징수세액 140원 지자체 납부

##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의무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국내원천)의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침 별지 42호의4(전산파일로 제출 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다음해 3월말까지(['16.3.31. 최초 시행](#))

제출유형	제출방법	제출장소
온라인제출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위택스( <a href="http://www.wetax.go.kr">www.wetax.go.kr</a> )
직접 방문제출	전산매체(CD, DVD, USB) 제출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자치단체
	서면제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 ※ 특별징수의무자가 법인일 경우 본점에서 지점의 특별징수명세서를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일괄 대리제출 가능
- ※ 세무대행인을 통해 대리 제출하는 경우에도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소재지  
자치단체로 제출 가능

## □ 특별징수세액(기납부세액) 본점 일괄 환급제도

- 납세자는 특별징수납세지와 사업장 소재지(신고납세지)가 다르더라도 사업장 소재지에 확정신고(4월)할 때 특별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기납부세액인 특별징수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본점소재지에서 일괄 환급함으로써 납세편의 제고

### □ 기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 (단위 : 천원)

구분		사업장			특별징수지		
		A시	B시	C시		B시	D시
총부담세액		10,000			징수세액	1,000	2,000
안분세액		5,000	3,000	2,000			
기납부	합계	3,000			① '16. 3월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세액	안분	1,500	900	600	② 본점에서 지급요청 (5월)		
차감 후 추가납부세액		3,500	2,100	1,400	③ 본점외 사업장소재지 송금(6월)		

※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에 관계없이 납세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특별징수세액을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 납부한 것으로 작성

### □ 기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 총부담세액에 상당하는 기납부세액은 안분, 초과분은 환급대상으로 본점 가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장			특별징수지		
		A시	B시	C시		B시	D시
총부담세액		10,000			징수세액	10,000	21,000
안분세액		5,000	3,000	2,000			
기납부 세액	총 합계	31,000			① '16. 3월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분대상액	10,000(총부담세액)			② 본점에서 지급요청(5월)		
	안분	5,000	3,000	2,000	③ 본점에서 일괄 환급 처리 (5월)		
	본점가산 (=환급)	21,000 (31,000-10,000)			※ 납세의무자에게 환급		
	소계	26,000	3,000	2,000			
환급세액		-21,000	0	0			

※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에 관계없이 납세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총부담세액은 사업장 소재지별 안분, 환급대상액(특별징수세액-총부담세액)은 본점 소재지의 기납부세액에 가산

## 5

#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비영리법인의 범위

- 내국법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법률 §1)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법」 제32조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새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음

- ❖ 법인세 신고대상 수익사업
  - 제조업, 도·소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 이자소득 (예외,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분리과세 선택가능)
  - 배당소득
  - 주식·신주인수권·출자 지분 양도수입
  -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양도 수입
  - 고정자산의 처분수입(3년간 고유목적사업 사용분 제외)
  - 채권 등 매도의 매매익

## □ 비영리내국법인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은 포함)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완납적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음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포함)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부분은 과세표준신고시 제외가능(법법§62①)  
⇒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지령 §100의22 ②)

####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특례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 6서식\*에 의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음
  - 이 경우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음

#### □ 비영리내국법인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비영리내국법인(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제외)이 토지·건물, 주식·출자지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법은 아래 두 가지 중 비영리내국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 가능

- |   |
|---|
| ① 일반적인 방법 :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자산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 |
| ②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방법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       |

## ○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시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 양도소득세(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방식으로 계산한 경우(지법§103조의32⑤)

- (과세표준 신고 불필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
- (과세표준 신고 필요) 누진세율 적용 자산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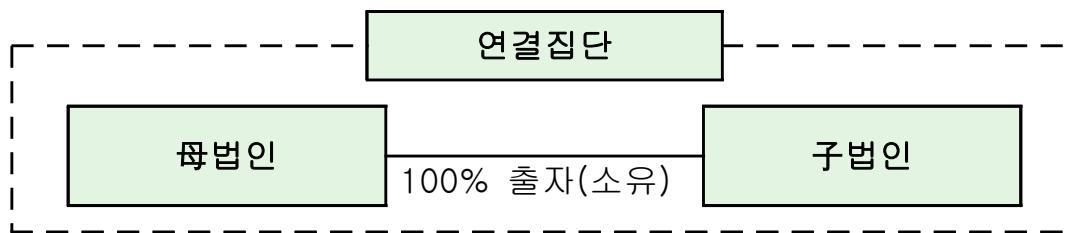
구분	대상소득	과세 특례
이자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103조의32①)	특별징수된 이자소득 (비영업대금 이외 제외)	<p>'①과세표준 신고' 또는 '②과세표준 신고 X' 선택 가능</p> <p>①신고O ; 특별징수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간주 ②신고X ; 과세종결</p>
양도소득 과세특례 (§103조의32 ③,④)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소득 (사업소득 있는 법인 제외)	<p>'①과세표준 신고' 또는 '②양도소득을 준용하여 신고' 선택 가능</p> <p>①과표신고 ;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준용하여 법인 지방소득세로 납부 ②양도준용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준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 (별지 제43호의 10 서식) ⇒ ②신고납부 이후 ①신고납부도 가능</p>

※ 법인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법법 §29)' 특례의 경우 과세표준  
이전 단계이므로 지방세법에 미규정

## V.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 연결납세방식 개요

- (개념)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실체이지만, 경제적으로 한 묶음인 기업집단에 대해서 기업집단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방식\*



\*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주식 100% 소유)하는 내국법인(완전모법인)과 그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의 관할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적용 (법법 §76의8①)

- (도입 취지) 연결법인간 결손금 통산을 통하여 세제상 불이익 방지 및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 도모

#### ❖ 용어의 정의 (지법 §85①)

구분	내용
연결납세방식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7절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
연결법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내국법인 (모법인, 자법인A, 자법인B)
연결집단	연결법인 전체 (모법인 + 자법인A + 자법인B)
연결모법인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 (모법인)
연결자법인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 (자법인A, 자법인B)
연결사업연도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 □ 세액계산

- 법인지방소득세 연결산출세액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합산 (지법 §103의35 참조)

❖ 연결납부세액 계산순서 (법법 제2장의3 및 지법 §103의34~36)

순서		내용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연결법인별로 개별세무조정을 통해 산출</li> </ul>
②	연결조정항목 제거 (개별세무조정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li> <li>각 연결법인의 접대비/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을 손금에 산입</li> </ul>
③	내부거래 손익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수입배당금, 접대비, 대손충당금 등 조정</li> </ul>
④	연결조정항목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기부금/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 재수행 후 결과를 연결법인별로 배분</li> </ul>
⑤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④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산 (예시 : 母 500 + 子A 300 - 子B 200 = 600)</li> </ul>
⑥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⑤) 중 해당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을 계산 (예시 : 母 <math>600 \times 5/8</math>, 子A <math>600 \times 3/8</math>)</li> </ul>
⑦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결법인별 '연결소득 개별귀속액(⑥)'에서 해당법인의 이월결손금, 다른법인의 이월결손금, 해당법인의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를 차감</li> </ul>
⑧	각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결법인별 '과세표준 개별귀속액(⑦)'을 합산</li> </ul>
⑨	연결산출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결과세표준(⑧)×세율</li> </ul>
⑩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세표준개별귀속액(⑦)×연결세율*</li> <li>* 연결세율 = 연결산출세액 / 연결과세표준</li> </ul>
⑪	연결법인별 납부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결법인별 산출세액(⑩)에서 각 연결법인에 적용하는 세액 공제 · 감면 및 기납부세액을 차감 (연결집단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 단위별로 계산)</li> </ul>
⑫	연결납부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결법인별 납부세액(⑪)'을 합산</li> </ul>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범인지방소득세는 연결산출세액에 합산		

## □ 신고 및 납부

- (신고기한)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지법 §103의37 참조)
    - \* 연결 과세표준등 신고 기한 (법법§76의17)
      - :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신고기한 1개월 연장 가능
    - 연결사업연도소득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의무는 연결모법인에게만 있으므로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의무를 이행할 필요 없음
  - (신고서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및 그 부속서류와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와 포기, 연결자법인의 추가와 배제 등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나, 1개월 이내에 납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음
- ※ 지법 제103조의37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는 연결모법인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가능

### 유의사항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은 연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류와 함께 각 연결법인의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와 세액조정계산서 부속서류\*도 제출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납부를 하였을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 (일반법인과 동일)

- (안분방법) ① 산출세액 계산 → 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 및 사업장 면적 안분 → ③ 관할 지자체의 탄력세율 반영한 세액을 가감 → ④ 지자체별 공제 · 감면, 가산세, 기납부 세액 반영

## VI.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 청산소득 개요

- (개념) 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 경우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가액이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금액, 각 사업 연도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소득을 최종적으로 정산
- (과세소득의 범위)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하여 납세의무를 부담 (지법 §87③ 및 법법 §3① 참조)

### □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법인세법」 상 청산소득금액과 동일 (지법 §103의41 참조)

$$\cdot \text{해산에 의한} \quad = \quad \text{잔여재산의 가액*} - \quad \text{해산등기일} \\ \text{청산소득금액}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qquad \text{현재의 자기자본총액}$$

\* 잔여재산의 일부를 배분한 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해산등기일부터 사업계속등기일까지 사이의 잔여재산 분배액의 총합계액

- (세율) 「지방세법」 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과 동일 (지법 §103의42 참조)

### □ 신고 · 납부

- (신고기한) 「법인세법」 제84조에 따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 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지법 §103의43① 참조)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법법 §84 ①)

-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청산중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한 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계약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간신고 (법법 §85)

-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 경우 : 분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미확정된 경우 :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납부) 「법인세법」 제84조에 따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지법 §103의43② 참조)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므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 납부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구분	내용
신고 · 납부 기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법인세법상 신고기한과 동일
안분여부	사업연도의 종료일(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사업계속등기일) 현재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
신고서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5호 서식)

**유의사항**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 및 동업기업전환법인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법인세와 동일함
- 「법인세법」에 따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청산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

□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가산금 적용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금을 미징수 (지법 §103의46① 참조)
- (조직변경 비과세) 내국법인이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비과세 (지법 §103의46② 참조)

## VII.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 외국법인 개요

- (개념) 국외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국내사업장 관련 · 귀속여부 및 부동산소득 존재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짐
-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에서 열거한 국내 원천 소득’ 및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 (지법 §87③ 및 법법 §3 참조)
- (조세조약) 조세조약은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법인 포함)에 국한하여 적용되며, 특정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어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

구분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국내소재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	납세의무 없음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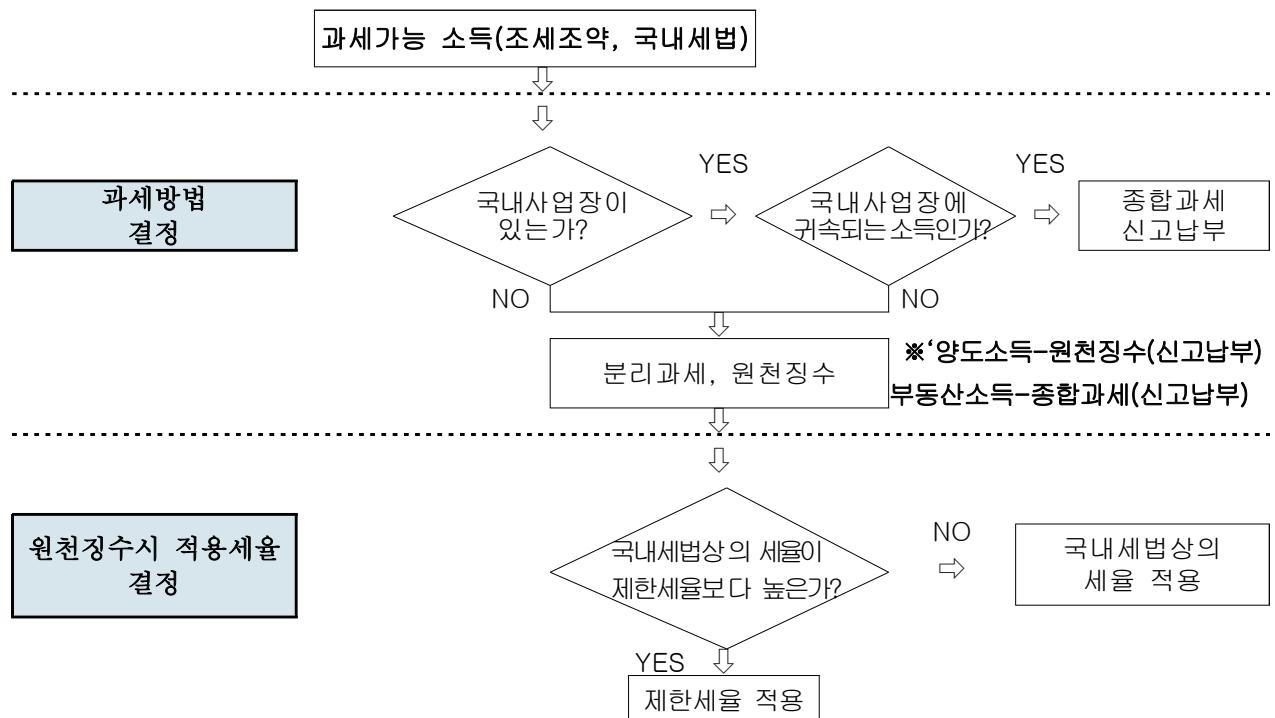
### ❖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권의 제한 사례

구분	내용
국내원천소득 범위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조세조약에서 국내세법상 <u>국내원천소득</u> 범위와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예) 국내에서 자산등 사용 또는 대가 지급시 국내원천소득이나, 조세조약은 사용료를 국내거주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li></ul>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미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내세법상 <u>국내원천소득의 과세권을 원천지국에 미부여하는 경우</u> 예)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만 과세권을 부여하거나,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시에만 원천지국에 과세권 부여</li></ul>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율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조세조약에서 <u>원천지국의 세율을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경우</u> 예)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일정세율 (통상 5%~15%)을 초과하여 과세하지 못하도록 규정</li></ul>

##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 소득(3호)이 있는 외국법인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는 합산하지 않음 (지법 §103의47① 및 법법 §91① 참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투자신탁의 이익은 내국법인과 같이 예납적 원천징수대상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등)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원천소득(3호 제외)을 지급하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과 관련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하여 납부 (지법 §103의52 및 법법 §98 참조)  
※ 원천(특별)징수 당한 외국법인은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양도소득(7호)의 경우에는 예납적 원천(특별)징수 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 외국법인의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 국내사업장의 범위(법법 §94 ①)

##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및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 (법법 §93)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sup>1)</sup>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원천징수세율 (법법 §98)
1호	이자소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특정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sup>1)</sup>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0% (채권 : 14%)
2호	배당소득			20%
4호	선박등 임대소득			2%
5호	사업소득			2%
8호	사용료소득			20%
9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10호	기타소득			20%
6호	인적용역소득		분리과세 (신고·납부 가능)	20%
7호	양도소득		예납적 원천징수 후 <sup>2)</sup>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3호	부동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라도 이자소득·투자신탁의 이익(법법 §97① 및 법법 §73) 및 특정인적용역소득(법법 §98⑧)은 예납적 원천징수하여야 함
- 2)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원천징수(법법 §98①) 및 특별징수(지법 §103의52)하고,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지법 §103의51)

- 외국법인이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승인 신청 가능 (지법 §103의51② 참조)
  - ※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승인도 신청한 것으로 봄 (지령 §100의27①)
-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에 기한연장일수 1일당 1만분의3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

### 유의사항

-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 연장은 외국법인에만 적용\*되며,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4개월(제6절 준용)에 신고기한 연장일수를 더한 기간까지 신고납부 해야함

## □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지점)에 대한 과세특례 : 외국법인(비영리 외국법인은 제외)의 지점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 (지법 §103의50 참조)
- ②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9호)하거나 국내소재 자산을 증여(10호)받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지법 §103의51⑤ 참조)

### ❖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법법 §98의2, 지령§100의28)

구분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과세기준 충족 (지령§100조의28 1호)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유가증권 양도 (지령§100조의28 2호)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자산 증여 (지령§100조의28 3호)
대상 자산	내국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내국 법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	국내에 있는 자산
요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div> 주식발행법인의 동일 사업연도에 2회이상 양도하여 조세조약상 과세기준 충족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div> 유가증권 ↓ 양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div> 국내자산 ↑ 증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div>
신고 세액	양도당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u>10%</u>	$\text{양도소득} \times \text{MIN}(\text{①}, \text{②}) \times \underline{10\%}$ ① 양도가액의 10% ② 양도차익의 20%	증여소득× <u>20%</u> × <u>10%</u>
납세지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해당자산의 소재지 (유가증권의 경우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신고 납부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내국법인 사 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다음달 10일* 까지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법인세법상 신고기한+1개월		
신고 서식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별지 제45호의2 서식)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별지 제45호의3 서식)	외국법인 증여소득 신고서 (별지 제45호의4 서식)

③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인적용역소득(6호)이 특별  
징수된 외국법인은 “소득 - 관련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지방  
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용역제공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납부할 수 있으며,  
기 특별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지법 §103의51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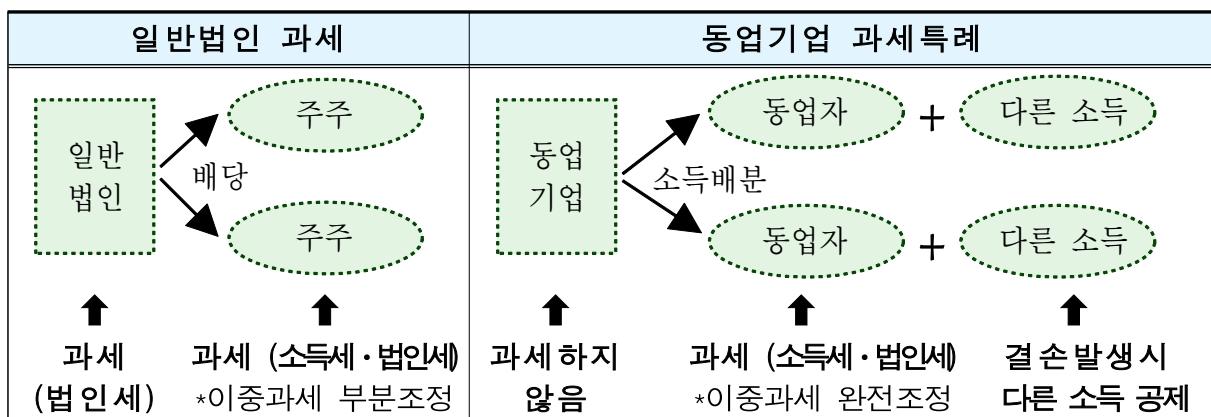
\*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특례의 신고 · 납부기한은 3개월(법법 §99)

## VIII.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 개요

- (개념) 동업기업을 도관(Pass through entity)으로 보아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

#### ❖ 일반법인 과세 vs. 동업기업 과세특례 비교



#### ❖ 용어의 정의 (조특법 §100의14)

구분	내용
동업기업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동업자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배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
동업자군(群)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동업자군)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지분가액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
분배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

- (도입 취지) 동업기업과 동업자의 이중과세문제 해결, 기업과세 선진화 및 조합·인적회사 설립을 통한 공동사업(컨소시엄) 활성화 지원
- (적용 범위) 동업기업으로서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한하여 적용 (조특법 §100의15)
  - ※ 적용대상 동업기업 : 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법무법인, 법무조합, 특허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관세법인 등) 및 특정 외국단체

## □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 (동업기업) 납세의무는 없으나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각 동업자에게 통지 (조특법 §100의23)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 지방소득세에 관한 협력의무는 없으나, 동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부과시 그 10%의 가산세를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부과
- (동업자) 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 (지법 §103의53① 참조)
- (동업기업 전환법인)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한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 (지법 §103의53①,② 참조)
  - \*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구분	내용
신고·납부 기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u>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u> <u>(=준청산일)</u>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인세법상 신고납부기한과 동일
안분여부	준청산일 현재 종업원수 및 건축물 연면적
신고서식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5호의6 서식)

## 유의사항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3년간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조특법 § 100의16 ⑤)하여야 하지만,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 기한내 전액 납부하여야 함

### □ 동업기업의 배분

- (소득금액)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배분 (지법 §103의54① 및 조특법 §100의18① 참조)  
⇒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에 포함
- (세액공제 등) 동업기업과 관련된 세액공제 등\*은 동업자간의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 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 (지법 §103의54 참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감면, 특별징수된 세액(지법 §103의29),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지법 §103의30),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지법 §103의57),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지법 §103의31)

⇒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방 소득세를 신고 · 납부시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서 공제 또는 가

### ❖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지령 §100의32)

구분	내용	
세액공제 등의 계산	세액공제 · 감면, 특별징수세액, 가산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동업기업을 하나의 <u>내국법인</u> 으로 보아 계산	
배분 받은 세액공제 등의 처리	세액공제 · 감면	산출세액에서 공제
	특별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산세	산출세액에 합산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합산 (동업자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

## □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sup>\*</sup>을 양도<sup>\*\*</sup>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일반주식 또는 특정주식(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양도소득 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지방소득세도 과세함 (지법 §103의55 및 조특법 §100의21 참조)
  - \* 동업기업의 지분가액 = 동업기업의 출자총액 × 동업자의 출자비율 ± 지분가액 증감
  - \*\*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양도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

##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배분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sup>\*</sup>하여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기한 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금액을 특별징수하여 납부 (지법 §103의56 및 조특법 §100의24 참조)
  - \* 동업자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고,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조특법 §100의24⑧)

### 유의사항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은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중 빠른날) 임 (지법 §103의56 및 §103의58)

## □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지법 §103의57 참조)

-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로 징수

### 유의사항

- 동업기업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징수되어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가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상 「특별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 는 적용되지 아니함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실무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관련 세법령 규정 및 예규 등의 원본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 》

발행일자 | 2016년 3월

발행처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정책과

집필·편집 | (총괄) 지방세정책과장 이동혁

행정사무관 박성근

주 무 관 김광필

주 무 관 김대철

※ 이 책자의 내용은 무단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